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경기도 의회 3급 직급 설치 및 그 외 시·도의회 복수직급
(3급 또는 4급) 설치(별표4)
- 나. 시·도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기준 상한 확대(별표5)
- 다. 인구 100만명 이상 시 의회 사무기구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문 정비(안 제15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을 “관할”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의회사무처장	국장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과장	과장 또는 담당관
시 · 도	서울특별시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부산광역시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경기도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그 밖의 광역시·특 별자치시· 도·특별자 치도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시·군·구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별표 4 제2호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시·도(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제외한다.)
 는 1명의 담당관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별표 5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의원의 정수	전문위원		
	총 정수	4급	5급 이하
20명 이하	6명 이내	5명	1명
30명 이하	7명 이내	6명	1명
40명 이하	9명 이내	7명	2명
50명 이하	11명 이내	7명	4명
60명 이하	13명 이내	8명	5명
80명 이하	16명 이내	8명	8명
100명 이하	18명 이내	9명	9명
110명 이하	21명 이내	11명	10명
120명 이하	22명 이내	12명	10명
130명 이하	23명 이내	12명	11명
131명 이하	24명 이내	13명	11명
140명 이하	24명 이내	13명	11명
150명 이하	25명 이내	13명	12명
151명 이상	26명 이내	14명	12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생 략)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 의회사무처와 <u>2개 이</u>	② ----- <u>관할</u> --
<u>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u>	-----
<u>쳐져 관할</u> 인구가 100만 명 이	-----
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	-----
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
있으며, 시·도와 시·군·구의	-----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
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13